### [별지 제2호서식]

<표 지>

년 월 일 실시 〇〇선거

# 선 거 인 명 부

작 성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확 정: 년 월 일

○○단체 제○투표소분(○책 중 ○권)

○ ○ 단체의 장 덴

주: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"OO단체 제O투표소분"을 "OO단체 OO구·시·군분"으로 적습니다.

#### <내 지>

등재번호	주 소	성 별	생년월일	성 명	투표용지수령인⑥		비고
1	2	3	4	5	(71)	(L <del>)</del> )	7

#### 주: 1. 명부기재방법

- ① "등재번호"칸에는 투표소단위(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구·시·군 단위를 말한다)로 그 구역의 선거인 성명의 가, 나, 다순(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순)으로 적되, 법인인 경우에는 명부의 맨 끝에 법인 명칭의 가, 나, 다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
- ② "주소"칸에는 회원명부상의 주소를 적습니다.
- ③ ⑤ "성별"칸과 "성명"칸은 선거인의 성별과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.
- ④ "생년월일"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되,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이 경우 동시조합 장선거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⑥ "투표용지수령인"칸 중 "(개)"의 칸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며, "(내"의 칸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선거의 일부무효로인한 재선거 등을 실시할 때에 한정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합니다.
- ⑦ "비고"칸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.
- 가.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·사망자·이중등재자·오기된 자를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. 다만,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.
- 나. 거소·순회·인터넷투표자명부에 오른 자는 비고칸에 "거소투표자", "순회투표자", "인터넷투표자"로 적습니다.
- 2.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윗 칸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"상동" 또는 ""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쪽을 달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.
- 3.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위탁단체의 장의 직인을 찍습니다.

## <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>

(1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O 책으로 (분 철)작성하였음.

○○단체의 장 인

(2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○○장소에서 열람 하게 하였음.

○○단체의 장 인

(3)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.

○○단체의 장 인

- 주: 1. (3)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.
  - 2.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(1), (2)항을 생략하고 (3)항의 '○○단체의 장'은 '관할위원회 위원장'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